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983호

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214호)을 다음과 같이 변경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

1.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중 변경할 내용

당 초	변 경
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I. 개요 1. 계획의 개요 ▪근거법률 : 항공법 제89조 *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Ⅲ. 대내외 여건 분석 4. 우리나라 항공여건 분석 (6) (신설)	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▪근거법률 : 공항시설법 제3조 *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(6) 비행훈련 및 항공기 개발산업 인프라 확대 필요 ○ 현재 나라온(KC-100/4인승) 등 소형 항공기의 자체 개발이 활발히 진행

중이며, 민간 무인기(드론) 활용분야도 농업·촬영·관측·조종교육 등으로 확대('13년~)되어 관련 산업 수요가 지속 증가 중임

- 국내 항공기 개발 산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수용 개발항공기(무인기 포함) 국가인증에 필요한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필요

V. 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

4. 미래를 준비하는 공항

훈련비행인프라 확보

○ (신설)

다양한 비행인프라 확보

○ 국내 항공기 개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되는 항공기(무인기 포함)의 개발시험·국가인증 등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추진

VI.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

2.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

(3) 서남권

(신설)

고흥항공센터에 국내 개발 항공기(무인기 포함)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비행장 확충 추진

○ 항공기뿐만 아니라, 국내에서 연구·개발되는 항행안전시설, 공항시설, 각종 운용장비 및 시스템 등 시제품의 성능시험 인프라로도 활용

(5) 기타

비행훈련인프라 구축

○ 조종인력 양성, 기존공항(김포 등) 안전 향상을 위해 수요분석 및 전용 비행장 건설 타당성 등 검토

○ '훈련용 비행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연구'용역 결과에 따라 조종인력 양성 및 기존 공항(김포 등)의 안전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추진